|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 | http://www.mke.go.kr |
|---|---|
| **2011년 11월 8일(화) 08:00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자료문의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성일 과장, 안지현 사무관(02-2110-5223)<br>석유산업과 조영신 과장, 여영섭 사무관(02-2110-5452)<br>부품소재총괄과 이승우 과장, 김태우 사무관(02-2110-5613) | |

# "이곳은 유사석유를 팔았던 주유소입니다."

##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, 부품 ·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건의 법률 공포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: 최중경)는 10.28일(금)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**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**과 **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**이 11.8일(화)**에 국무회의를 통과**하였다고 밝혔다.

□ 금일 의결된 **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**의 개정을 통해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·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**유사석유제품을 제조·판매한 경우**에는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못하고 **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**이다.

○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·수입·저장·운송·보관 판매하여 **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**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**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**하도록 하였다.

* 현재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제 홈페이지,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음

* 사업장 공표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 법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, 규모 및 정도 등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

○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**처벌 강화**와 **소비자의 알권리 보장**을 통해 최근의 유사석유판매업소 폭발사고 등의 유사석유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, 이날 함께 의결된 **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**의 개정을 통해 **법률의 유효기간**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**2021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**하였다.

○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·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제조업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란 판단하에 부품·소재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, 그간 **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확대, 기술경쟁력 제고, 글로벌 부품·소재기업 육성**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.

○ 그러나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무역역조 지속,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미흡, 첨단소재분야의 취약한 경쟁력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.

○ 이에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**부품·소재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**하였다.

□ 지경부는 금일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**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**하여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붙임 **국무회의(11.8) 통과 법률 공포안 (2건) 주요내용**

## 1.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☐ **소관과 : 석유산업과**(조영신 과장, 02-2110-4890)

☐ **주요 내용**

○ **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한**
(안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)

- 석유사업자가 영업시설 개조, 착색제·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·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

* 현재는 금지행위 위반 석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남용되어 유사석유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

○ **유사석유제품 금지의무 위반 게시문 부착 강제**(안 제14조의 2 신설)

- 유사석유제품을 제조·수입·저장·운송·보관·판매하여 행정처분(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)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
- 게시문의 내용, 게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위임

* 현재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제 홈페이지,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사석유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음

○ **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**(안 제39조제4항 신설)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판매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위소 등의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함

## 2. 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
☐ **소관과 :** 부품소재총괄과(이승우 과장, 02-2110-5611)

☐ **주요 내용**

○ 국내 부품 및 소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**효력발생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**

○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 인증의 유효기간이 **'09년 6월 30일부로 만료**(부칙 제2항)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**법률에 남아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함**